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496918	
등록번호	110111-4969189	
<b>상 호</b>	<del>주식회사 라이프시맨틱스 (Life Semantics)</del>	
	주식회사 라이프시맨틱스 (Life Semantics Corp.)	2015.10.01 변경 2015.10.12 등기
<b>본 점</b>	<del>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8, 215호(삼성동)</del>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8길 21, 4층(삼성동, 카오리온 빌딩)	2012.10.22 변경 2012.10.23 등기
	<del>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7층(삼성동, 무역센터이트레이드타워)</del>	<del>2014.09.15 변경 2014.09.15 등기</del>
	<del>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7층(삼성동,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del>	2014.09.15 경정 2014.09.17 등기 2014.09.17 착오 발견
	<del>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17길 22, 3층(양재동, 두원빌딩)</del>	2015.07.15 변경 2015.07.28 등기
	<del>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5층(신사동, 두원빌딩)</del>	2016.06.04 변경 2016.06.14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3(역삼동)	2019.10.31 변경 2019.11.14 등기
<b>광고방법</b>	<del>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del>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lifeseantics.kr">http://www.lifeseantics.kr</a>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15.10.01 변경 2015.10.12 등기
<b>1주의 금액</b>	금 500 원	
<b>발행할 주식의 총수</b>	<del>1,000,000 주</del>	
	50,000,000 주	2015.10.28 변경 2015.10.30 등기

등기번호	496918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del>100,000 주</del>		.
<del>보통주식</del>	<del>100,000 주</del>	<del>금 50,000,000 원</del>	.
발행주식의 총수	<del>200,000 주</del>		2013.03.19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200,000 주</del>	<del>금 100,000,000 원</del>	2013.03.1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del>340,000 주</del>		2013.12.04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340,000 주</del>	<del>금 170,000,000 원</del>	2013.12.0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del>342,000 주</del>		2014.06.10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342,000 주</del>	<del>금 171,000,000 원</del>	2014.06.1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del>344,000 주</del>		2014.07.22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344,000 주</del>	<del>금 172,000,000 원</del>	2014.07.2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del>346,000 주</del>		2014.07.25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346,000 주</del>	<del>금 173,000,000 원</del>	2014.07.2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del>400,000 주</del>		2014.12.23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400,000 주</del>	<del>금 200,000,000 원</del>	2014.12.2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del>550,000 주</del>		2015.10.30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550,000 주</del>	<del>금 275,000,000 원</del>	2015.10.3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del>595,883 주</del>		2015.11.07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595,883 주</del>	<del>금 297,941,500 원</del>	2015.11.0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del>617,160 주</del>		2016.03.30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595,883 주</del>		2016.04.05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del>21,277 주</del>	<del>금 308,58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del>759,529 주</del>		2016.05.04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738,252 주</del>		2016.05.09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del>21,277 주</del>	<del>금 379,764,5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del>786,703 주</del>		2017.08.12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738,252 주</del>		2017.08.14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del>48,451 주</del>	<del>금 393,351,5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del>1,047,964 주</del>		2018.06.20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918,433 주</del>		2018.06.20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del>129,531 주</del>	<del>금 523,982,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del>8,383,712 주</del>		2020.08.18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7,347,464 주</del>		2020.08.21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del>1,036,248 주</del>	<del>금 4,191,856,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del>8,409,481 주</del>		2020.08.19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8,193,265 주</del>		2020.09.03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del>216,216 주</del>	<del>금 4,204,740,5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del>8,409,481 주</del>		2020.08.27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8,409,481 주</del>	<del>금 4,204,740,500 원</del>	2020.09.0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8,746,917 주		2020.09.05 변경

등기번호	496918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보통주식 8,746,917 주	금 4,373,458,500 원	2020.09.09 등기

목 적			
<del>1. 인터넷상의 건강관련 정보서비스 및 솔루션관련 사업</del>	<2013.05.06	삭제	2013.05.07 등기>
<del>1.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제조, 서비스, 판매(도소매)업</del>	<2013.05.06	삭제	2013.05.07 등기>
<del>1. 정보처리기술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업</del>	<2013.05.06	삭제	2013.05.07 등기>
<del>1.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업</del>	<2013.05.06	삭제	2013.05.07 등기>
<del>1. 콘텐츠 제작, 서비스, 판매(도소매)업</del>	<2013.05.06	삭제	2013.05.07 등기>
<del>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del>	<2013.05.06	삭제	2013.05.07 등기>
<del>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del>	<2013.05.06	삭제	2013.05.07 등기>
1. 인터넷상의 건강관련 정보서비스 및 솔루션관련 사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2.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제조, 서비스, 판매(도소매)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3. 정보처리기술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4.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5. 콘텐츠 제작, 서비스, 판매(도소매)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6.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7. 의료관광알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여행사 및 기타여행 보조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8. 온라인 의료관광 정보제공 및 통신판매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9. 일반여행 알선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10.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사업 및 교육자 파견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11. 의료기기 및 의약품, 건강식품 등 수출입 및 유통사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12. 번역 및 통역사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13. 국내외 손해보험 대리점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14. 인터넷 상품중개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15. 국제회의 기획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16.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17. 교육서비스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18. 전시 및 행사대행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19.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유치기관에 대한 각종 컨설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20. 각종 연구용역 사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21. 병의원 광고대행업 및 컨설팅업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del>2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del>	<2013.05.06	추가	2013.05.07 등기>

등기번호	496918
------	--------

	<2015.10.01 삭제 2015.10.12 등기>
22. 전자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제조	<2015.10.01 추가 2015.10.12 등기>
23. 생체신호 계측 및 감시장치의 연구개발 및 제조	<2015.10.01 추가 2015.10.12 등기>
24. 의료용 분석기기의 연구개발 및 제조	<2015.10.01 추가 2015.10.12 등기>
25. 가정용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제조	<2015.10.01 추가 2015.10.12 등기>
<del>26.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del>	<2015.10.01 추가 2015.10.12 등기>
	<2017.02.24 삭제 2017.03.09 등기>
<del>27. 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 및 서비스업</del>	<2015.10.01 추가 2015.10.12 등기>
	<2017.02.24 삭제 2017.03.09 등기>
<del>2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del>	<2015.10.01 변경 2015.10.12 등기>
	<2017.02.24 삭제 2017.03.09 등기>
26. 컴퓨터 및 주변장치(하드웨어) 개발, 제조, 판매(도소매)업	<2017.02.24 추가 2017.03.09 등기>
27. 건강관리 제/상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2017.02.24 추가 2017.03.09 등기>
28. 부동산 임대업	<2017.02.24 추가 2017.03.09 등기>
29. 위 각 호에 관련된 무역업	<2017.02.24 추가 2017.03.09 등기>
30. 위 각 호에 관련된 도,소매 및 서비스업	<2017.02.24 추가 2017.03.09 등기>
3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7.02.24 추가 2017.03.09 등기>

#### 임원에 관한 사항

<del>사내이사 송승재 780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33길 20, 101동 1909호(청담동, 청담삼성1차아파트)</del>	
<del>사내이사 송승재 780214-*****</del>	
2013년 05월 06일 주소삭제	2013년 05월 07일 등기
2015년 09월 26일 퇴임	2016년 03월 08일 등기
<del>감사 양상원 730725-*****</del>	
2014년 12월 10일 사임	2014년 12월 11일 등기
<del>사내이사 권희 790605-*****</del>	
2013년 05월 06일 취임	2013년 05월 07일 등기
2016년 03월 04일 사임	2016년 03월 08일 등기
<del>대표이사 권희 79060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33길 20, 101동 1909호(청담동, 청담삼성1차아파트)</del>	
2013년 05월 06일 취임	2013년 05월 07일 등기
<del>2015년 05월 08일 사임</del>	<del>2015년 05월 15일 등기</del>
2015년 05월 15일 사임	2015년 05월 15일 등기
2015년 05월 19일 등기원인일자 경정	
<del>대표이사 송승재 780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33길 20, 101동 1909호(청담동, 청담1차아파트)</del>	
2014년 09월 16일 취임	2014년 09월 17일 등기
2015년 09월 26일 퇴임	2016년 03월 08일 등기
<del>사내이사 김동범 720521-*****</del>	
2014년 09월 22일 취임	2014년 09월 29일 등기
2016년 03월 04일 사임	2016년 03월 08일 등기

등기번호	496918
<del>감사 김병철 730105-*****</del>	
2014년 12월 10일 취임	2014년 12월 11일 등기
2017년 02월 24일 사임	2017년 03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송승재 780214-*****	
2016년 03월 04일 취임	2016년 03월 08일 등기
2019년 03월 27일 중임	2019년 04월 10일 등기
<del>사내이사 권희 790605-*****</del>	
2016년 03월 04일 취임	2016년 03월 08일 등기
2019년 03월 27일 중임	2019년 04월 10일 등기
2020년 03월 30일 사임	2020년 04월 13일 등기
<del>사내이사 윤진철 661113-*****</del>	
2016년 03월 04일 취임	2016년 03월 08일 등기
2019년 03월 04일 퇴임	2019년 04월 10일 등기
<del>대표이사 송승재 780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33길 20, 101동 1909호(청담동, 청담삼성1차아파트)</del>	
2016년 03월 04일 취임	2016년 03월 08일 등기
대표이사 송승재 780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 30, 101동 801호(삼성동, 삼성동중앙하이츠빌리지)	
2016년 11월 29일 주소변경	2016년 12월 23일 등기
2019년 03월 27일 중임	2019년 04월 10일 등기
<del>사내이사 김선옥 690304-*****</del>	
2016년 04월 29일 취임	2016년 05월 09일 등기
2019년 03월 27일 사임	2019년 04월 10일 등기
<del>감사 정무식 650316-*****</del>	
2017년 02월 24일 취임	2017년 03월 09일 등기
2020년 03월 30일 퇴임	2020년 04월 13일 등기
<del>사내이사 최철진 780313-*****</del>	
2019년 03월 27일 취임	2019년 04월 10일 등기
2019년 06월 28일 사임	2019년 07월 11일 등기
사외이사 신수용 750702-*****	
2019년 03월 27일 취임	2019년 04월 10일 등기
<del>기타비상무이사 허남 631107-*****</del>	
2019년 03월 27일 취임	2019년 04월 10일 등기
2020년 08월 06일 사임	2020년 08월 21일 등기
감사 이성락 581004-*****	
2020년 03월 30일 취임	2020년 04월 13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구태언 690308-*****	
2020년 03월 30일 취임	2020년 04월 13일 등기
사내이사 이규정 810914-*****	
2020년 03월 30일 취임	2020년 04월 13일 등기
사내이사 안시훈 700813-*****	
2020년 03월 30일 취임	2020년 04월 13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조 우선주의 내용~~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본 권 우선주”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제2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1.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
- ~~2. 전환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다.~~
- ~~3. 상환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는 상환주식이다.~~
- ~~4. 의결권이 인정되는 주식이다.~~

~~5. 상기 각호와 같은 “본 권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권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이하 “본 권 우선주주”라 한다)의 전환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못하거나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우선배당을 완료하거나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2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 권 우선주”는 보통주 일주와 동일하게 일주당 일의결권을 가진다. 단, 전환비율의 조정 시 그에 따라 전환 후 보유하는 보통주 일주당 일의결권을 갖는다.~~

~~제3조 배당금에 관한 사항~~

~~(1) “본 권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로서, 발행가액기준으로 매년 최저 연(0)%의 현금배당을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다른 우선주식과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 권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2) “본 권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본 권 우선주”에 대한 배당액이 본 조 제1항에 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액에 미달할 때에는 미달하는 배당액(이하 “부족 우선배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다른 우선주 및 보통주에 우선하여 지급한다.~~

~~(3) “회사”가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하되, “본 권 우선주”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의 형태로 주식 배당을 한다.~~

~~(4) 배당결의가 있기 전에 “본 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회사”에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제4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 권 우선주”는 당해 우선주의 발행가액 및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및 다른 우선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이 분배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 및 다른 우선주에 대하여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하고, 그 후에도 남은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2) “회사”가 청산을 위하여 “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은 “회사”가 매각하고자 하는 중요한 재산을 제3자에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인수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역 및 양도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인수인”은 위 서면통지에 대하여 매수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위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매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매각대상 재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회사”~~

등기번호	496918
------	--------

는 “인수인”에 대한 위 서면통지에 기재된 조건보다 제3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전환에 관한 사항~~

(1)전환청구기간. “본 건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일 이후 존속 기간 만료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 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전환비율. 우선주 일주당 보통주 일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전환비율의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3)전환비율의 조정. 본 항에서 “전환가격”이라 함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전환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개념으로서, 전환가격에 대한 발행가액의 비율이 “전환비율”이 된다(조정 전 최초 전환가격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발행가액과 동일하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항에서 “전환가격”은 본 항에 의하여 조정이 이미 일어났던 경우의 조정 후 전환가격을 포함한다.

전환주식의 전환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 대상인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 전환가격)으로 계산된 수에서 단주를 절사하여 확정한다. 여기서 전환가격이란 전환주식의 발행 당시에는 전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하되,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본조 제6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거나,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또는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연계증권의 권리행사가격)으로 조정된다. 단,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1 “회사”의 주식이 기업공개를 통하여 상장되는 경우 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동 전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공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동 금액이 액면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1.2. “회사”가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주식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본 호에 의한 조정사유가 2호의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에게 유리한 전환가격 조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2. “회사”는 전환가격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사유 및 조정된 전환가격을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인수인”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i) 전환가격의 조정, (ii) 당시의 전환가격 및 발행가액과 (iii) 전환권 행사로 받을 보통주식 수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4) “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전환청구의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관련규정(제346조 내지 제351조)을 따른다. 단,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등기번호	496918
------	--------

~~제6조 상환에 관한 사항~~

~~(1) “본 권 우선주”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환 청구한 경우에, “회사”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부터. 다만, 제2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권 우선주”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환청구할 수 있다~~

~~2. 상환방법 : “본 권 우선주”의 주주는 “회사”에게 상환청구의사 및 상환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상환가액 : “본 권 우선주”의 “당초 발행가액”과 동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이 때, “본 권 우선주”에 대해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상환가액에서 차감하되, 차감액은 전술한 연복리 (3)% 적용산출금액을 한도로 한다.~~

~~(2) “회사” 및 “대주주”는 이익잉여금 처분 시 법정준비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대주주”는 관련절차에서 그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 및 “대주주”는 “인수인”의 요청시 상법 제461조의 2(법률 제10696호 일부개정 2011. 05. 23.)에 따라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법정준비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대주주”는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016년 03월 30일 설정      2016년 04월 05일 등기  
 2020년 08월 19일 말소      2020년 09월 03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1. 의결권: 보통주1주의 동일한 1주당 1개의 의결권~~

~~2. 배 당:~~

~~(1) '본 권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로서 발행가액기준으로 매년 최저 연(0)%의 현금배당을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다른 우선주식과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 권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2) '본 권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당해 사업년도의 '본 권 우선주'에 대한 배당액이 계약서에 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액에 미달할 때에는 미달하는 배당액(이하 '부족 우선배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년도 이후의 사업년도에 다른 우선주 및 보통주에 우선하여 지급한다~~

~~(3) '회사'가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관련 규정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하되, '본 권 우선주'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의 형태로 주식배당을 한다~~

~~(4) 배당결의가 있기 전에 '본 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회사'에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3. 전환조건~~

~~(1) 전환기간: '본 권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일 이후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 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전환비율: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3) 전환가액 조정:~~

~~'전환가격'이라 함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전환비율을 조정하~~



등기번호	496918
------	--------

~~기 위하여 사용된 개념으로서, 전환가격에 대한 발행가액의 비율이 '전환비율'이 된다.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환가격'은 조정이 이미 일어났던 경우의 조정 후 전환가격을 포함한다~~

~~전환주식의 전환에 따라 발행 될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대상인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 전환가격)으로 계산되 수에서 단주를 절사하여 확정한다. 여기서 전환가격이란 전환주식의 발행당시에는 전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하되,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가.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거나,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또는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연계증권의 권리행사가격)으로 조정된다. 단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ㄱ. '회사'의 주식이 기업공개를 통하여 상장되는 경우 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동 전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공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동 금액이 액면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ㄴ. '회사'가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교환비율을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주식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나. '회사'는 전환가격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사유 및 조정된 전환가격을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인수인'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i)전환가격의 조정, (ii)당시의 전환가격 및 발행가액과 (iii)전환권 행사로 받을 보통주식 수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4. 상환조건~~

~~(1)상환기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부터.~~

~~(2)상환방법: '본 권 우선주'의 주주는 '회사'에게 상환청구의사 및 상환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상환가액: '본 권 우선주'의 '당초발행가액'과 동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이 때, '본 권 우선주'에 대해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상환가액에서 차감하되, 차감액은 전술한 연 복리(3)% 적용산출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7년 08월 09일 설정      2017년 08월 14일 등기  
2020년 08월 19일 말소      2020년 09월 03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1. 의결권: "본 권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주당 일 의결권을 가진다. 단, 전환비율의 조정시 그에 따라 전환 후 보유하는 보통주 일주당 일 의결권을 갖는다.~~

~~2. 배당:~~

~~(1)"본 권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로서 발행가액 기준으로 매년 최치 연1.0%의 현금배당을~~

등기번호	496918
------	--------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다른 우선주식과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 권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2)"본 권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본 권 우선주"에 대한 배당액이 본 조 제1항에 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액이 미달할 때에는 미달하는 배당액(이하 "부족 우선배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기발행된 다른 우선주 및 보통주에 우선하여 지급한다~~

~~(3)"회사"가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하되, "본 권 우선주"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의 형태로 주식배당을 한다.~~

~~(4)배당결의가 있기 전에 "본 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회사"에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3. 전환조건~~

~~(1)전환청구기간 : "인수인"은 발행일 이후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언제든지 "본 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전환비율 : "본 권 우선주" 일주당 보통주 일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전환비율의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전환가액 조정 :~~

~~본 항에서 "전환가격"이라 함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전환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개념으로서 전환가격에 대한 발행가액의 비율이 "전환비율"이 된다(조정 전 최초 전환가격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발행가액과 동일하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항에서 "전환가격"은 본 항에 의하여 조정이 이미 일어났던 경우의 조정 후 전환가격을 포함한다~~

~~전환주식의 전환에 따라 발행 될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 대상인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 전환가격)으로 계산된 수에서 단주를 절사하여 확정한다.~~

~~가. 회사가 "본 권 우선주"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 권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나.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전환비율은 그 합병, 감자,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해당 사건당시"~~

~~본 권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 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상장시 공모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과 공모 직전 전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라. M&A가 이루어 지는 경우 M&A시 회사 주식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과 M&A직전 전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마. "회사"는 전환가격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사유 및 조정된 전환가격을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인수인"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i) 전환가격의 조정 (ii~~

등기번호	496918
------	--------

~~)당시의 전환가격 및 발행가액과 (iii)전환권 행사로 받은 보통주식의 수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3)"회사"는 "본 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이 수가 "본 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전환청구의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관련규정(제346조 내지 제351조)을 따른다. 단,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상환조건:~~

~~(1)"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환 청구한 경우에 "회사"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가. 상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다만, 제2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상환청구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환청구할 수 있다~~

~~나. 상환방법 : "인수인"은 "회사"에게 상환청구의사 및 상환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 상환가액 : "본 건 우선주"의 "당초 발행가액"과 동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5.0%(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5.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이 때 "본 건 우선주"에 대해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상환가액에서 차감하되, 차감액은 전술한 연복리 5.0% 적용산출금액을 한도로 한다~~

~~(2)"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익잉여금 처분시 법정준비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절차에서 그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회사"의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요청시 상법 제461조의 2(법률 제10696호 일부개정 2011.05.23.)에 따라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법정준비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018년 06월 11일 설정      2018년 06월 20일 등기~~

~~2020년 08월 27일 말소      2020년 09월 03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1)상호:주식회사 국민은행

(2)본점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3)기타사항:대행업무의 범위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등기번호	496918
2020년 08월 03일 설치 2020년 08월 21일 등기	

### 전 환 사 채

주식회사 라이프시멘틱스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삼십억원 정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일억원권 20매, 금 삼억삼천구백만원권 1매, 금 이억육천오백만원권 1매, 금 이억오백만원권 1매, 금 일억구천일백만원권 1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전액납입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가. 전환비율: 전환청구한 권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그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주식의 예탁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기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 전환가액 : 1주당 9,134원

다. 전환가격의 조정:

(1)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2)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 기발행주식수 +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

(3)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하고,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5) 2021년 7월 31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회사의 상장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전환가액을 주당 5,709원으로 조정한다.

(6)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등기번호	496918
------	--------

(7)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의 인수자는 본 사채발행일(2020년 8월 26일)의일부터 만기일(2025년 8월 26일)직전일까지 본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08월 26일 발행      2020년 09월 03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16년 03월 04일 설정      2016년 03월 08일 등기 >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기술 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회사의 임·직원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대학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회사가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2017년 02월 24일 변경      2017년 03월 09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16년 03월 04일 설정      2016년 03월 08일 등기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등기번호	496918
------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지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4. 주식매수 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나.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 2017 년 02 월 24 일 변경 2017 년 03 월 09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1)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16 년 03 월 04 일 설정 2016 년 03 월 08 일 등기 >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2017 년 02 월 24 일 변경 2017 년 03 월 09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6 년 03 월 04 일 설정 2016 년 03 월 08 일 등기 >

⑥ ~~회사의 임·직원 외의 자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

등기번호	496918
------	--------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각 7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그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7 년 02 월 24 일 변경 2017 년 03 월 09 일 등기 >  
 회사의 임직원 외의 자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행사가능일로부터 5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그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20 년 03 월 30 일 변경 2020 년 04 월 13 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6 년 03 월 04 일 설정 2016 년 03 월 08 일 등기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니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거나 교부한 주식의 이익 배당에 관하여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교부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 또는 교부 된 것으로 본다.

< 2017 년 02 월 24 일 변경 2017 년 03 월 09 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12 년 09 월 26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2 년 09 월 26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등기번호	496918
------	--------

---

# 열 램 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